

한일 고대의 일부다처제(一夫多妻制)

- 『新猿樂記』의 <次の妻>를 중심으로 -

김 영*

youngkim@dhu.ac.kr

Contents

1. 들어가기
2. 본론
 1. 『新猿樂記』에 나타난 세 아내
 2. 『新猿樂記』의 <次妻> 논란과 고려사회의 <次妻>
 3. 일본 고대사회의 <妻><妾>에 관한 기록
 4. 일본 헤이안시대 문학작품에 나타난 一夫多妻制
 5. 고려사회의 <妻><妾>과 一夫多妻制
 6. 일본 헤이안사회의 <重婚>에 관한 규정
 7. 고려사회의 <重婚>에 관한 규정
3. 맺는 말

Abstract

日本の平安朝後期に成立した『新猿樂記』に登場する<第一の本妻>、<次の妻>、<第三の妻>に対して、工藤重矩氏は「第一の本妻は離婚された妻であり、<次の妻>はその離婚後の妻である」と解釈している。ところが、ここの<次の妻>は夫の右衛門尉と同時的結婚生活を維持している妻であり、また二人の妻が第三の妻のことを嫉妬しているという内容から、平安朝の<一夫多妻制>の婚姻形態を現わしていると考えられる。これと関連して、韓国と日本、両国の歴史にみえる<次妻>の用例は一夫一妻制のもとでいわれる<妾>ではなく、高麗王朝と平安朝に現れている<一夫多妻制>の有力な証拠であると言える。たとえば、平安朝の<妻><妾>という記録は<妻>と記入される人は一人に限定されるという機械的な原則に基づいたことに過ぎず、当時の社会は妻と妾がまだ分離されていない状態であった。一方、高麗王朝の婚姻形態について、従来<一夫一妻制>と<一夫多妻制>、そしてこれらの二つの形態が併存しているという三つの立場が鋭い対立をみせて

* 대구한의대학교 외국어학부 일본어과 전임강사

いるが、本考察を通して、<妻><妾>という呼称は存在したが、身分や社会的差別のなかった、ほぼ対等な地位の数名の<妻ら>が存在していたと考えられるのである。もう一つ、韓日、両国が<一夫多妻制>の社会であったという証拠として<重婚>に関する規定を考察した結果、平安朝の方は唐律令の影響から生れた有形無実の法律であり、高麗王朝の方は<重婚>の法律自体が存在していなかったことが分かる。以上のような考察を通して、古代両国は両方とも唐の律令を模倣して律令国家体制を構築していったが、婚姻形態においては、両方とも中国の<一夫一妻制>とは違う<一夫多妻制>の婚姻形態をもっていたといえるだろう。

Key Words : 新猿楽記(Sinsarugakki), 高麗時代(Koryo dynasty), 王朝時代(Heian dynasty), 一夫多妻制(polygamic customs), 一夫一妻制(monogamy)

1. 들어가기

필자는 지난번 논고¹⁾에서 후지와라아키히라(藤原明衡)의 『新猿楽記』(1058)는 11세기 중엽에 성립된 작품으로 당시 중류귀족들의 생활상과 시대상을 짐작할 수 있는 귀중한 작품이라고 소개한 바 있다. 그리고 『新猿楽記』라는 작품을 통해 일본 왕조시대의 이상적 아내상은 어떤 모습으로 상징되는지 구체적인 고찰을 시도하였다. 그것은 일본 고대사회의 남성귀족들의 여성관(女性觀)과 당시의 시대상(時代相)에 대한 연구였으며 고대사회에서 중세사회로 넘어가는 과도기(過渡期), 즉 본격적인 가부장제도(家父長制度)와 이에(家)가 성립하는 중세사회로 들어서기 전에 나타난 사회현상이라고 결론을 대신했다.

본 논고에서는 『新猿楽記』에 등장하는 첫 번째 아내(第一の本妻), 두 번째 아내(次の妻), 세 번째 아내(第三の妻)에 관해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소개하고 당시 일본사회의 일부다처제(一夫多妻制)와 일부일처제(一夫一妻制) 논란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려고 한다.

그리고 나아가 헤이안조와 동시대인 우리나라 고려시대의 혼인제도와 비교하여 중국의 일부일처제(一夫一妻制)와 다른 혼인형태인 일부다처제(一夫多妻

1) 拙稿 「일본 왕조시대의 이상적 아내상-『新猿楽記』의 3명의 아내를 중심으로 -」 『일본어문학』39집, 2008.12. pp.169~185

制) 사회의 특징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종래 최재석²⁾을 비롯한 이광규 등도 중국, 한국, 일본 동양 3국의 가족 결혼 사회제도 등의 비교연구의 결과 한국의 사회제도는 일본보다는 중국과 비슷하다는 것이 그들의 연구결과이다. 이는 종래 한일 양국 모두 고대 혼인제에 있어 중국에 지나치게 편중하여 중국과의 영향관계만을 연구해 왔던 연구경향에 기인한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본 논고에서 고려와 헤이안시대의 혼인제를 비교 고찰하는 시점 - 일부다처제라는 혼인형태를 중심-으로, 중국의 일부일처제와는 다른 형태로 발달한 한일 양국의 혼인형태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즉, 최근 일본에서는 일본 율령에 도입된 중국의 처첩제도가 실제 일본의 혼인실태와는 분리되어 있었음이 몇몇 학자들에 의해 지적되어 왔다. 한국 또한 고려시대 여성사 연구에서는 남귀여가혼(男歸女家婚) 및 그에 따른 가족의 비부계적(非父系的) 성격을 지적하고, 자녀균분상속 등을 이유로 중국과 달리 고려 여성의 지위가 높았다고 설명하고 있다³⁾. 이러한 연구는 한일 고대 관계사 연구뿐만 아니라 여성사 비교 연구에도 좋은 자극제가 될 뿐만 아니라 종래 편향된 중국 중심의 비교연구에 일침을 가하는 연구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2. 본론

1. 『新猿樂記』에 나타난 세 아내

第一の本妻は、齡既に六十にして、紅顔漸く衰へ、夫は年僅に五八に及び、色を好むこと、甚だ盛んなり。蓋し弱冠にして奉公の昔は、偏に舅姑の勢徳に耽って、長成して顧私の今は、只年齢の懸隔なることを悔ゆ。(中略)⁴⁾

2) 최재석 『한국가족제도사연구』(일지사, 1983. p.208~285), 이광규 「우리나라 혼례문화」(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1997. pp.203~206)

3) 최숙경 「고려시대의 여성」 『한국여성사』1, 이화여대출판부, 1972 ; 김은파 「상속형태를 중심으로 본 고려시대 여자의 지위」 『전북사학』2, 1978. pp.85~108

4) 藤原明衡撰、重松明久校注 『新猿樂記雲州消息』(古典文庫66、現代思潮新社、2006年) p14, 이하 前掲書라 한다.

次の妻は、夫婦同年なり。西施に勝れるに非ずと雖も、又指せる過失無し。心操調和にして、水の器に随ふが如し。剛柔の進退、雲の風に靡くが如し。いはんや裁縫、染張、経織、績紡の道、吏捍、興販、家治能治の条、嘆めても猶余有り。(中略)⁵⁾

第三の妻は、有る所の女房強縁の同僚なり。年十八、容顔美麗にして、放逸豊顔なり。一偏に妖艶の道を立てて、未だ嘗て世間の上を知らず。然りと雖も、沈淪窮屈の性を養ひて、世路喧がうの思を罷む。縦、公に奉り、官を衛る営みと雖も、談ふ日は、已に彼を忘る。⁶⁾

『新猿樂記』에 등장하는 첫 번째 아내(第一の本妻)는 남편 우에몬이(右衛門尉)에 비해 20살이나 연상인 60살에도 불구하고 아주 호색적인 여인이다. 우에몬이는 자신보다 권세가였던 아내의 가문으로 인해 젊은 나이에 관직에 등용되었지만 지금은 연상의 아내를 맞이한 것을 후회하고 있다. 두 번째 아내(次の妻)는 남편과 나이가 같고 미인은 아니지만 그다지 큰 과실은 없으며 마음 씩씩이가 부드럽고 따뜻하다. 재봉이나 염색과 같은 가족 구성원의 의복을 만들고 관리할 뿐만 아니라 시장에 나가 의복을 팔아 생계에 보태기도 하였다. 세 번째 아내(第三の妻)는 용모가 수려하고 몸매 또한 뛰어나다. 요염의 길(妖艶の道)에서는 세상에서 이 여인보다 위가 없을 정도이며 그녀의 요염함은 세상 사람들의 조롱이나 두 아내의 질투에도 아랑곳 하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장생불사(長生不死)의 약(藥)이라 비유하고 있다.

위의 세 아내는 연령별로 보면 60세, 40세, 18세로 배열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에몬이가 결혼한 순서를 나타내고 있으며 시간적 흐름에 따라 <第一の本妻>, <次の妻>, <第三の妻>가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여기에 등장하는 <次の妻>란 첫 번째 아내를 맞이한 이후에 결혼한 아내라는 의미이며 <第三の妻>란 두 번째 아내를 맞이한 이후에 결혼한 아내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세 번째 아내(第三の妻)에 대해 첫 번째, 두 번째 아내가 질투하고 있다는 대목이 나오는데 이를 통해 주인공 우에몬이는 세 아내와 동시에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新猿樂記』는 헤이안후기의 일본사회가 一夫多妻制의 혼인형태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5) 前掲書 pp.16~17

6) 前掲書 pp.17~18

2. 『新猿樂記』의 <次妻>논란과 고려사회의 <次妻>

『新猿樂記』에 등장하는 <次の妻>에 대해 구도(工藤重矩)씨는

次妻は継妻と同じ意であろう。『次』はランクではなく、順序である。

라고 해석하고 있는데, 工藤 씨가 말하는 順序는 한 아내가 사별이나 이혼 후 결혼한 아내라는 의미의 순서를 의미하므로 『新猿樂記』에 등장하는 <次の妻>의 용례와는 다를 수 있다. 구도 씨는 또한 『新猿樂記』의 세 아내에 대해 첫 번째 아내는 이혼당한 아내이며 두 번째 아내는 첫 번째 아내와 이혼한 후에 결혼한 아내라고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본문에서 첫 번째 아내에 대해

但、諸の過失有りと雖も、既に数子の母と為る。之を如何と為るや。8)

하지만 결국 ‘수많은 잘못이나 과실이 있을지언정 이미 여러 자녀의 어머니가 되었으니 (이혼도 할 수 없고) 이를 어찌하리오.’ 하며 젊은 시절 아내 집안의 후광으로 출세를 하지만 나이 들어 보니 그녀가 자신보다 연상이고 질투심도 많아 이혼하고 싶지만 자기 자식의 어머니로써의 역할을 무시할 수 없어 첫 번째 아내로서의 자리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내용이 나온다.

이는 명백히 첫 번째 아내와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음을 말해 준다. 이러한 구도 씨의 의견은 헤이안사회가 일부일처다첩제(一夫一妻多妾制)로 연결되는 중요한 사안임을 생각할 때 여기서 다시 한 번 충분한 검토를 필요로 한다고 생각한다. 즉 일본사회가 一夫一妻制 혹은 一夫多妻制로 분류되는 혼인형태에 관한 중요한 사항인 것이다.

한편, 고려시대 문헌에도 <次妻>용례가 보이는데, 이것은 正妻이외의 또 다른 <妻>를 의미한다고 여겨진다.

(恭讓王3년8월)도평의사사가 上言하기를, “---무릇 부인은 반드시 室女로부터

7) 工藤重矩『平安朝の結婚制度と文学』(風間書房, 1994年)

8) 前掲書 p.14

남의 正妻가 된 자라야 封하여 질 수 있으며 아버지가 벼슬이 없고 嫡母가 아들이 없는데 次妻의 아들이 벼슬이 있는 경우 嫡母에게 封함을 허락한다. 그 次妻는 비록 夫로 因하여 封함을 받을 수는 없으나 所生의 아들이 벼슬이 있을 경우 마땅히 어머니가 아들로써 귀하게 되는 예를 좇아서 懸君의 封함을 받는다.---”라고 하니, 이를 聽從하였다. (『고려사』권75, 志29, 選舉3, <封贈之制>)⁹⁾

이 내용은 봉작에 관한 법 규정을 건의한 내용인데 그 내용 중에 嫡母에게는 아들이 없고 次妻의 아들 중 관직에 있는 자가 있을 경우 嫡母에게 책봉을 허락한다는 규정에 <次妻>라는 용어가 등장한다. 이에 의하면 문무고관에 正妻, 次妻 등 수명의 아내가 있고 그것은 상속상 嫡庶의 문제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次妻>는 正妻와 비슷하게 봉작을 받을 수 있는 신분이며 <妾>을 의미하지 않는다. 따라서 次妻는 正妻이외의 또 다른 妻를 의미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 <次妻>와 正妻외에 있었으리라 생각되는 <妾>과의 관계는 신분상 어느 정도의 차별이 있었는가는 쉽게 상상할 수 없으나 여기 등장하는 <妾>은 조선시대와 같은 노예와 비슷한 신분의 <婢妾>의 의미는 내포하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한편 일본사회에 있어서의 次妻에 대해 나카가와¹⁰⁾씨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대보령 등에서 次妻또는 妾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嫡妻는 1인에 한정하였다’ 라든지, ‘왕조시대에는 첩이라 호칭된 者의 위에 次妻로 불리는 중간계급이 있었다’ 라고 하여, 次妻는 妾과 正妻의 중간에 위치한 존재로 파악하고 있다.

이와 같이 <次妻>는 한일 고대 양국의 일부일처다첩제에서 말하는 <妾>이 아님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次妻>의 존재는 고려사회와 일본의 왕조시대에 나타난 일부다처제(一夫多妻制)의 유력한 증거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9) 『고려사』권75, 志29, 選舉3(정인지외, 신서원, 2001)

10) 中川善之助(『妻妾論』中央公論社, 1936) pp.51~52

3. 일본 고대사회의 <妻><妾>에 관한 기록

고대 문헌 중 일본의 처첩에 관한 最古의 기록은 서기 3세기경에 쓰여진 『삼국지』의 <魏書東夷傳>이라 할 수 있는데, 이것은 한반도 일대에 나타난 고대 국가들에 관한 가장 오랜 기록 가운데 하나이며, 각 국가의 제천의식(祭天儀式)이나 풍속(風俗) 등에 관해 비교적 자세한 기록이 전해져 고대사(古代史) 연구에 중요한 사료(史料)로 쓰이고 있다.

그 나라 풍속상 나라의 대인들은 대개 네댓 명의 여자를 데리고 살고 하호들이라도 간혹 두세 명의 여자를 데리고 산다. 부인들은 음란한 짓을 하지 않고 질투도 하지 않는다.¹¹⁾ (其俗 国之大人 皆四五婦 下戸或二三婦 婦不淫 不妬忌)

여기에는 4,5명의 아내를 모두 <婦>라 칭하고 있으므로 보아 아직 <妻><妾>의 구별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후 기기(記紀)에는 天皇의 嫡后를 「キサキ」「ヒメ」, 嫡妻 「ムカヒメ」에 대한 「メ」, 前妻 「코ナミ」에 대한 後妻 「우하나리」 등의 명칭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이것은 일본 고대사회의 다처제(多妻制)의 실상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된다. 예를 들면 『日本書紀』(上)에 등장하는 神武天皇의 노래에는

前妻^{コナミ}가 肴乞はさば 立稜麦の 実の無けくを 幾多聶えね 後妻^{ウハナリ}가 肴乞
はさば 齋賢木 実の多けくを 幾多聶えね(『日本書紀』上、卷第三)¹²⁾

이처럼 <前妻><後妻>가 동시에 기록되어 있다. 이는 <前妻><後妻>가 동시에 존재하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는데, 前妻가 사망하거나 이혼 후에 後妻를 맞이한 것이 아니라 동시에 두 명의 처와 부부관계를 맺었다고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이후에 나타난 모노가타리(物語)류를 살펴보면, 『大和物語』에는 일찍이 <妻>가 있으면서 동시에 또 다른 <妻>를 소유하는 일화가 몇 가지 존재한다.

11) 『삼국지』(진수지음, 김원중옮김, 민음사, 2007) p.775

12) 『日本書紀 上』(岩波書店, 1967) p.198

よしいとひける宰相のはらから、大和の掾といひてありけり。これがもとの妻のもとに、筑紫より女を率て来てすゑたりけり。もとの妻も、心いとよく、今の妻もにくき心なく、いとよく語らひてゐたりけり。(『大和物語』141단)¹³⁾

男、女の衣を借り着て、今の妻のかりいきて、さらに見えず。(『大和物語』167단)¹⁴⁾

여기서 <もとのめ>는 먼저 결혼한 아내를 지칭하며 <いまのめ>는 그 후에 결혼한 아내를 말하는 것이다. 양자 모두 <妻(め)>이며 여기에서 <妻>와 <妾>의 구별은 명확하게 찾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中将、病いとおもくしてわづらひけるを、もとの妻どもあり、これはいとしのびであることなれば、えいきもとぶらひたまはず、

(『大和物語』165단)¹⁵⁾

『大和物語』165단에는 <もとの妻ども>라고 기록하고 있듯이 ‘복수’로 사용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이것은 남자가 새로운 아내를 맞이하였을 경우 그 이전에 결혼한 여성은 모두 <もとのめ>라고 불렀을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다¹⁶⁾.

이러한 사실은 <妻>와 <妾>의 관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았던 시대임을 입증하며 단지 시간적 전후 관계에 따라 <妻(め)>를 <もとのめ>와 <いまのめ>로 구별한 당시 사회의 편의적 구분법이었다고 생각된다.

이에 관한 주목할 만한 연구로 세키구치(関口裕子)¹⁷⁾씨는 『古事記』와 『日本書紀』, 『万葉集』등의 한문체 고대 문헌에 나타난 <妾>의 용례를 고찰하였는데, <妻><妾>의 기록이 <妻>라고 기록하는 사람은 1인에 한정된다는 기계적 원칙에 근거한 것임에 불과하며 이러한 기준은 최초의 혼인관계에 들어간 여인이 <妻>, 그 이후에 혼인관계에 들어간 여인이 <妾>으로 기록된다고 주장했다.

13) 『大和物語』(小学館 新編日本文学全集12、1994) p.358

14) 『大和物語』 p.402

15) 『大和物語』 p.400

16) 이에 관한 주장은 일찍이 胡潔의 『平安貴族の婚姻慣習と源氏物語』(風間書房, 2001. pp.58~78)에서 이루어졌다.

17) 関口裕子 『日本古代婚姻史の研究下』(塙書房、1993年) pp.27~51

그리고 나아가 당시 일본 사료에 나타난 처첩의 구별이 위로부터의 강권에 의한 것이며 실제 당시 사회에서는 ‘처첩미분리(妻妾未分離)’가 실행되었다고 결론지었다.

4. 일본 헤이안시대 문학작품에 나타난 一夫多妻制

이후 헤이안시대의 문학작품에는 일부다처제를 암시하는 여러 일화가 등장한다. 예를 들면, 『마쿠라노소시(枕草子)』에는 당시 일부다처제에 대한 세쇼나곤(清少納言)의 단상(斷想)이 드러난다.

また、家ゆすりて、取りたる嬬の来ずなりぬる、いとすさまじ。さるべき人の宮仕するがりやりて、いつしかと思ふも、いとほいなし。(22段「すさまじきもの」)¹⁸⁾

정말 불쾌한 일 중의 하나는 온 집안이 떠들썩하게 받아들인 남편이 아내의 곳에 찾아오지 않는 것이다. 게다가 대단한 집안 출신으로 궁중출신을 하고 있는 집안의 여인에게 남편을 빼앗기고 언제 내 곁으로 돌아오나 기다리고 있는 것은 더욱 더 불쾌한 일이다.

いみじうしたてて嬬取りたるに、いとほどなく住まぬ嬬の、さるべき所などで、舅にあひたる、いとほしと思ふらむ。ある人の、いみじう時にあひたる人の嬬になりて、ただ一月ばかりもはかばかしう来でやみにしかば、すべていみじう言ひ騒ぎ、乳母などやうの者は、まがまがしきことなど言ふもあるに、(251段「いみじうしたてて嬬とりたるに」)¹⁹⁾

대단한 준비를 해서 받아들인 사위가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의 집에 찾아오지 않게 되었는데 우연히 장인어른을 만났을 때 남자는 장인을 불쌍하다고는 생각하고 있을까 하는 기사이다. 그 뒤에는 훌륭한 집안의 사위가 되었는데도 단지 한달 정도만 자주 아내를 찾아오다가 그 발길이 끊어진 것에 대한 이야기

18) 『枕草子』石田穰二訳注(角川文庫、1980年) p.39

19) 『枕草子』p.113

이다.

이와 같이 『枕草子』에는 재력가의 사위가 된 남성이 곧 아내에게 싫증을 내고 다른 여인에게 가 버리는 일화가 많이 등장한다. 세쇼나곤이 이러한 일화를 많이 싣고 있는 것도 당시 헤이안시대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非一非再) 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당시 정식으로 사위를 맞아들여 아내의 집에 공공연히 찾아오게 하고 그 기간이 일정기간 지속되면 사회적으로 공인된 부부관계가 되었는데, 이처럼 공인된 아내는 2-3명 정도는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동시대의 『榮華物語』에도 미치나가(道長)는 아들 요리미츠(頼通)와 다카히메(隆姬)라고 하는 무라카미천황(村上天皇)의 황자인 도모히라친왕(具平親王)의 딸을 결혼시켰으나 이후 산조천황(三条天皇)의 딸인 황녀 온나니노미야(女二宮)를 다시 아들의 정처(正妻)로 맞아들이려고 하는 장면이 있다. 그러면서 미치나가(道長)는 아들 요리미츠(頼通)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며 설득하는 장면이 나온다.

「男は妻は一人のみやは持たる、痴の様や。いままで子もなかめれば、とてもかうもただ子を設けんとこそ思はめ。この渡りはさやうにはおはしましなん」と宣はすれば、(『榮華物語』第十二)²⁰⁾

‘남자가 아내를 한명만 갖는 다는 것은 바보 같은 일이다. 아직 아이도 없으니 빨리 아이를 갖는 거라고 생각하라, 황녀는 반드시 아이를 낳아줄 것이다’라고 미치나가(道長)가 아들 요리미츠(頼通)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당시 귀족들에게는 일부다처제(一夫多妻制)가 일반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서 헤이안시대 초기에는 수명의 아내들 사이에 위, 아래가 없던 것이 점차 아내들 중에서도 서열이 서서히 정해지게 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11세기 중엽에 성립된 『新猿樂記』에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부인이 등장하는데(第一の本妻、次妻、第三の妻), 여기에는 아직 처(妻)와 첩(妾)의 명확한 신분 차이나 서열순위가 나타나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다.

20) 『榮華物語上』(松村博司校注、日本古典文学大系、岩波書店、1964) p.366

5. 고려사회의 <妻><妾>과 一夫多妻制

『고려사』 형법지에 의하면

妻擅去徒二年 改嫁流二千里 妾擅去徒一年半 改嫁二年半 娶者同罪 不知有夫不坐

(『고려사』 권135, 지38, 형법1, 호혼)²¹⁾

<妻>가 함부로 떠나가면 도형 2년이고 개가하면 유형 2천리에 처하고 <妾>이 마음대로 떠나면 도형 1년 반이며 개가하면 2년 반에 처하고 그 여자를 취한 자도 그 여자와 같은 죄로 처벌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법 규정은 <妾>은 <妻>와 마찬가지로 夫와 ‘영속적 관계’를 갖고 있었으며 그에 따른 사회적 의무사항, 즉 부부로서의 도리를 준수하도록 강요받을 가능성을 크다. 이 기사에 의하면 <妾> 또한 夫와同居의 형식을 취하지 않았나 추측할 수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지금까지의 고려시대의 혼인형태에 관해 연구사를 개관해 보고, 종래의 연구에 나타난 주요 용례를 중심으로 고려사회가 실제 一夫多妻制가 시행되고 있었는지 재검토해 보기로 하자.

고려시대 혼인형태에 관한 연구성과는 크게 一夫一妻制와 一夫多妻制, 그리고 이 두 형태가 병행하는 세 가지 입장으로 볼 수 있다²²⁾. 이러한 입장들은 서로 첨예한 대립을 이루며 고려사회와 역사, 여성사 연구에도 크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

실제 처첩에 관한 최초의 기록에는 7세기 통일신라 시대 『삼국유사』의 安吉의 기사에 보인다.

21) 『고려사』 (정인지외, 고전연구실, 신서원, 2002)

22) 1. 일부다처제로 보는 연구.

최재석(1983) 『한국가족제도사연구』(일지사, 1983)

2. 일부다처제와 일부일처제가 병행하는 것으로 보는 연구

김두현(1969) 『한국가족제도연구』(서울대학교출판부, 1969)

3. 일부일처제로 보는 연구

허홍식(1994) 「고려 여성의 지위와 역할」(고려사시민강좌, 15집, 1994)

장병인(1990) 「고려시대 혼인제에 대한 재검토」(한국사연구, 71집, 1990)

신라 문무왕의 서제 차득공이 거사로 변장하고 지방을 순회할 때 州吏 安吉이 범상치 않음을 보고 자택으로 초대하여 妻妾三人에게 모실 것을 종용하는 기사이다. 여기서 一妻는 거절하고 다른 二妻는 명에 따랐다고 한다.

牛首州 北原京 至於武珍州 巡行里 州吏安吉見是異人 邀致其家 盡情供億 至夜 安吉喚妻妾三人曰 今侍宿客居士者 終身偕老 二妻曰 寧不居 何以於人同宿 其一妻曰 公若許終身居 則承命矣 從之(『삼국유사』 권2, 문호왕법민)²³⁾

위 기사에서 안길은 3명의 처첩을 거느리고 함께 동거하며 생활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기사에는 一妻, 二妻라고 기록하는 바 <妻>와 <妾>의 신분의 차가 분명하지 않고 호칭의 구별 또한 명확하지 않다.

그리고 『고려도경』의 기록에는

관부에는 勝 이 있고 관인에는 妾이 있으며 부유층에는 3, 4인의 妻가 있었다고 한다.

(『고려도경』 권22, 雜俗1)²⁴⁾

처와 첩의 구별이 명확하지 않을 뿐 아니라 3,4인의 妻가 존재하여 多妻制의 실상을 엿볼 수 있다.

『고려도경』은 송나라 사신 서공(徐兢)이 1123년 고려에 건너 와 1개월 체류하면서 보고 들은 것을 글과 그림으로 저술한 책인데 고려시대 일반인들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자료이다. 여기서 서공은 고려 여성들의 개방적인 성생활에 관해 기술하고 있다.

‘분별없이 사랑하고 재물을 중히 여기며, 남자와 여자의 혼인에도 경솔히 함치고 쉽게 헤어져’²⁵⁾

‘여름에는 날마다 두 번씩 목욕을 하는데 시냇가에서 많이 한다. 남자 여자 구별 없이 의관을 언덕에 놓고 물굽이 따라 벌거벗는데 이런 일을 괴상하게 여지지 않

23) 『삼국유사』 권 제2, 문호왕법민. (역자 정옥, 진한 M&B, 2007) p.156

24) 『고려도경』 권22, 雜俗 1(민족문화추진위원회, 서해문집, 2005) p.179

25) 『고려도경』 19권 民庶 p.154

는다²⁶⁾

일반 백성들은 남녀를 구별하지 않고 자유롭게 시냇가에서 목욕을 즐기고 있었다는 것인데 이것은 물론 고위 관리나 신분이 높은 여성들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었으며 일반 서민 여성들의 생활상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알몸을 보이고 목욕하는 것에 대해 수치스러워 하지 않는 모습에서 결혼 전에는 비교적 자유로운 성생활을 구가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이와 같이 서고는 고려사회가 성적으로 개방된 사회였음을 지적하고 있는데 이것은 외부인들이 본 고려 내부사회를 짐작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고려사』 열전에는 2명의 처를 거느리고 있는 사례가 적지 않게 존재하는데, 나유, 구영검, 강윤충, 임정기 등의 사례가 그러하다.

A 裕亦已娶新妻 先入賊中得 舊室還復爲夫婦如初(『고려사』 권104 열전17 羅裕傳)²⁷⁾

당시 조정의 관원들의 처들이 모두 반란군에게 붙잡혀 갔기 때문에 대개 고쳐 장가를 들었는데 반란군이 평정되자 처들 가운데 돌아온 자들이 있었지만 모두 내버리고 말았다고 한다. 나유 역시 새로 처를 얻었으나 맨 먼저 적군 속에 들어가 옛 처를 찾아내고 귀환한 뒤 다시 처음과 같이 부부로 되어 살았기 때문에 그 소식을 듣는 사람들이 모두 의리가 바른 사람이라고들 하였다.

여기서 나유는 <新妻>를 얻고 나서 다시 <舊室>과 부부관계를 맺었음을 알 수 있는데 의리가 바른 사람이라 칭찬한 것을 보면 동시에 두 명의 아내와 결혼생활을 영위했으리라 생각된다.

B 初娶安珪之女 生二子 又娶金子章之女 生二子五女(『고려사』 권114 열전27 具榮儉傳)²⁸⁾

26) 『고려도경』 제23권 雜俗 2 p.175

27) 『고려사』 권104 열전17 羅裕傳. p.328

28) 『고려사』 권114 열전27 구영검전 p.247

구영검전에는 구영검이 처음에 안규의 딸과 결혼하여 아들 형제를 낳고, 또 김자장의 딸과 결혼하여 두 아들과 딸 5명을 낳았다고 기록하고 있다.

<初娶><又娶>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두 번이상의 결혼이 가능했으며 두 번째 아내와도 자녀 7명을 출산한 것을 보면 두 번째 결혼 또한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해 주고 있다.

여기에도 일본 왕조시대의 <前妻><後妻>가 동시적(同時的) 결혼이었다면 고려시대의 <初娶><又娶>에도 그러한 동시적 결혼의 흔적을 충분히 찾아볼 수 있다.

C 現有_{三妻} 又娶 故密直趙石堅服喪妻 (『고려사』 권124 열전 37 강윤충전)²⁹⁾

현재 아내가 3명이나 있는데도 아직 상복도 벗지 못한 고인 밀직 조석견의 처에게 장가를 들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강윤충은 천예의 신분이었으나 조적의 난 때 충혜왕을 호종하여 일등공신이 되었으나 그의 품행이 바르지 않아 신하들이 왕에게 강윤충의 악행에 대해 상소한 글이다.

이 상소문에서 그는 현재 아내가 3명이나 있는데도 고인 밀직 조석견의 처에게 장가들어 조석견의 유산을 횡취 하였다고 말한다.

여기서 <現有_{三妻}>란 현재 3명의 <妻>가 있다는 것인데 이러한 다수의 아내를 모두 <妻>라 기록하는 것으로 보아 조선시대에 나타난 <妻><妾>의 명확한 구별이 없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네 번째 아내를 맞이하였을 때에도 위의 B용례에 나타난 두 번째 결혼의 <又娶>를 사용하는 것을 볼 때, 첫 번째 나 두 번째나와 같은 서열의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으리라 생각할 수 있다.

D (林貞杞)娶盧進義之女 爲_{貳妻} (『고려사』 권123 열전 36 임정기전)³⁰⁾

임정기는 고려시대 백성을 가혹하게 수탈하여 뇌물을 바쳐 왕에게 총애를 받은 사람인데, 노진외의 딸을 맞아하여 둘째 처로 삼았다고 전한다. 이 기사에도 두 번째 아내를 <貳妻>라고 기록하듯 <妻><妾>의 구별이나 신분적 차별이

29) 『고려사』 권124 열전37 강윤충전 p.160

30) 『고려사』 권123 열전36 임정기전 p.121

존재하지 않았으리라 생각할 수 있다.

위의 용례처럼 고려시대에는 일부다처제(一夫多妻制)를 입증하는 사료가 많이 존재하는데 아내가 수명이 존재해도 모두 <妻>라 기록하고 있는 것에 주목하고 싶다. 이는 고려사회가 조선시대처럼 <妻>와 <妾>의 구별이 명확하지 않았으며 <妾>은 조선시대 주자학의 도입으로 일부일처제(一夫一妻制)를 강행하려 했던 정치적 제도의 변화로 인해 嫡庶의 분변이 엄격해 지며 妻妾의 구별 또한 명확해 졌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간단히 요약하면, 고려사회에는 <妻><妾>의 명칭은 존재했지만 거의 신분이나 사회적 차별이 없는 거의 지위가 동등한 여러 명의 ‘妻들’이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으며 이는 고려사회가 一夫多妻制 사회였음을 말해주는 것이라 하겠다.

6. 일본 헤이안사회의 <重婚>에 관한 규정

한일 고대사회가 一夫多妻制 사회였음을 입증하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안으로 양국의 <重婚>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重婚>이란 양국 모두 단어의 의미 그대로 아내나 남편이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또 혼인관계를 갖는 것을 말하며 현대 형법상으로는 처벌의 원인이 된다.

먼저 일본 사료에 나타난 이러한 규정을 살펴보면, 『万葉集』에는 당의 戶婚律에 의거한 七出例과 三不去, 兩妻例가 나타난다.

教諭史生尾張少昨歌一首

七出例云、但犯一条、即合出之。無七出輒弃者、徒一年半。三不去云、雖犯七出、不合弃之。違者杖一百。唯犯 姦惡疾得弃之。兩妻例云、有妻更娶者徒一年、女家杖一百離之(万葉集、卷16、4105) 31)

七出例란 남편과 아내가 이별할 수 있는 7가지 이혼 조건을 말하며, 三不去는 七出例에 해당해도 아내와 헤어질 수 없는 3가지 경우를 말한다. 그리고 兩妻例란 重婚관계에 관한 조례로 가족질서를 지키기 위해 一夫一妻라는 원칙을

31) 『万葉集』(新日本古典文学全集, 小学館. 1996) p.264

엄수하도록 妻라고 불리는 지위의 여성을 1인으로 제한한다는 규정이다.

하지만 이 규제는 당의 율령을 모방한 것으로 중국에서는 구속력이 있었지만 고대 일본에서는 반드시 지켜지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³²⁾. 또한 이러한 견해의 일례로 다키가와(滝川)³³⁾는

万葉集卷十八には、「妻有りて更に娶る者は徒一年、女家は杖一百」なる戸婚律の逸文が見えているから、当時重婚に非らざることが、また婚姻成立の一要件であったことは疑いない。しかし、妻とほとんど等しい妾を持つことには何らかの制限もなかったのであるから、この禁令實質上有名無実であって、当時の貴族はいずれも正妻とも側室とも区別つかない女を二、三人持っていた。

라고 당시 율령의 혼인규정과 어긋나는 일본사회의 혼인형태를 지적하고 있다. 즉 당시 귀족은 모두 정처나 측실 등이 구별되지 않는 아내를 2,3명 소유하고 있었음을 설명하고 있다.

이는 당나라 율령의

諸有妻更娶妻者徒一年 女家減一等 若欺妄而娶者 徒一年半 女家不坐 各離之
(『唐律疏議』권13, 戶婚 有妻更妻)³⁴⁾

<有妻更妻> 금제법이라 하여, <妻>가 있는데 또 <妻>를 취하면 도 1년, 만일 속여서 취했으면 도 1년 반에 처하고 이혼시켰다는 규정이다. 일본은 이를 모방하여 법 규정을 정했고 이것이 『万葉集』에도 나타나 있는데 이는 중국법의 영향을 강하게 받아 현실과 무관하게 법적으로만 존재했었던 有形無實의 법률이었다고 볼 수 있다.

7. 고려사회의 <重婚>에 관한 규정

한편, 고려조에는 당이나 헤이안조처럼 有妻更妻를 금하는 법 규정이 존재하

32) 小島憲之外(新日本古典文学全集 『万葉集』四 4105番歌 脚注参照)

33) 滝川政次郎 『日本法制史』有妻閣, 1982. 인용은 講談社學術文庫1985年復刻版에 의한다.

34) 『唐律疏議』(中華書局, 1985) p.292

지 않았다. 이것은 고려왕조가 一夫多妻를 암암리 공인하는 형식을 취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당시 고려왕실은 족내혼과 다처형태를 다수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반인에게 엄격히 一夫一妻를 강요하기는 어려웠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위에서 살펴 본 『고려도경』의 사례,

‘분별없이 사랑하고 재물을 중히 여기며, 남자와 여자의 혼인에도 경솔히 합치고 쉽게 헤어져’³⁵⁾

‘부잣집에서는 처를 3, 4인씩 맞아들이며 조금만 맞지 않으면 곧 이혼한다’³⁶⁾

등은 중국인에게 비친 고려사회가 당시 중국사회와 비교하여 多妻制가 가능했고 離婚 또한 용이했음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다음의 기사는 고려사회가 多妻 사이의 신분차이나 사회적 차별이 그다지 크지 않아 가능했던 일이라 생각된다.

高宗元年, 封忠獻妻任氏, 爲綏成宅主, 王氏, 爲靜和宅主, 任氏, 本將軍孫洪胤妻也, 忠獻, 殺洪胤, 聞其美私之, 王氏, 康宗庶女也 (『고려사』 권129, 열전42, 최충헌)³⁷⁾

고종원년에 최충헌(崔忠獻)의 처(妻) 임씨를 봉(封)하여 수성택주를 삼고 왕씨는 정화택주를 삼았는데, 임씨는 장군 손홍윤의 처(妻)였는데 최충헌이 손홍윤을 죽이고 그 아름다움을 듣고 사통(私通)한 여인이며 왕씨는 강종의 서녀 신분이었다.

이 기사에서 임씨와 왕씨 兩妻는 모두 봉작(封爵)을 받고 있는데 두 처가 모두 봉작을 받는다는 것은 兩妻 간의 신분차이나 사회적 차별이 그다지 없음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조선시대 고려왕조의 다처제 비난기사를 통해 고려사회에 얼마나 多妻制가 성행하였는지 간접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고려사회에는 없었던 <有妻更妻>금제법이 조선 초에 들어 태종13년에야 법적 제도장치가 마련되기

35) 『고려도경』民庶 p.154.

36) 『고려도경』雜俗1. p.170

37) 『고려사』 권129, 열전42, 최충헌. p.441

에 이른다.

신 등이 삼가 살피건대, 황명에서 반강한 제율에 ‘처가 있는데도 첩으로써 처를 삼는 자는 장 90대에 아울러 고쳐서 바꾸고, 만약 처가 있는데 다시 처를 얻는 자 또한 장 90에 이이한다.’고 하였습니다. 신 등은 일찍이 매빙, 인례가 갖추어졌느냐 약하였느냐를 가지고 처, 첩으로 정하였으니, 앞으로는 자기 자신이 현재 첩으로써 처로 삼은 자나 처가 있는데도 처를 얻은 자는 아울러 모두 안올하여 처결하고, 당자가 죽었어도 다시 고쳐 바꾸거나 이이하지 않는 자는 원컨대 춘추의 중자를 펴하여 성풍한 예에 의하여 먼저 사람을嫡으로 하여 봉작하고 체전한다면 (하략)
(조선왕조실록 『태종실록』태종13년 3월 10일 기축)³⁸⁾

태종13년 사헌부에서 적첩(嫡妾)의 분수를 세울 것을 상소한 기사인데 <妻>와 <妾>을 분간하도록 하되 대명률에 의하여 처가 있는데 또 다른 처와 혼인한 경우에는 장90장에 처하고 離異시키도록 하였고 當者が 죽은 후에 드러난 경우는 先娶를嫡으로 삼아 봉작하고 체전하도록 하였다

위의 기사에서처럼 고려사회는 유처취처(有妻娶妻)를 처벌하는 법 규정, 즉 重婚을 처벌하는 법률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것이 조선시대에 들어서야 일부일처제(一夫一妻制)를 도입하려는 체제변화에 따라 태종13년에야 법 규정이 마련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태종실록』에서는 이러한 법 규정을 마련하게 된 배경이 되었다고 할 수 있는 고려 왕조의 다처제(多妻制) 비난 기사를 여러 곳 발견할 수 있는데 이 또한 고려사회의 일부다처제(一夫多妻制)에 관한 중요한 증거가 될 것이다.

전조의 말년에 예의와 교화가 행해지지 못하니 부부의 의리가 먼저 무너져 경대부, 사들이 오직 욕심만 쫓고 정애에 미혹되어 처가 있는데도 처를 취하는 자가 있고 첩으로써 처를 삼는 자도 있어 마침내 오늘날 처첩이 서로 송사하는 단서가 되었습니다.

(조선왕조실록 『태종실록』 권27, 태종13년 3월 10일 기축)³⁹⁾

38) 『태종실록』(국사편찬위원회, 탐구당, 1984) p.665.

39) 『태종실록』 p.665

전조(前朝) 말엽에 예제(禮制)가 문란(紊亂)하고, 기강(紀綱)이 능이(陵夷)하여
저 대소 인원(大小人員)이 경외(京外)에 두 처(妻)를 임으로 아울러 두었습니다.

(조선왕조실록 『태종실록』 권27, 태종14년 6월 20일 신유)⁴⁰⁾

대사헌 유관 등이 先妻와 後妻의 자식들이 嫡子를 주장하는 송사가 잇달아
사회문제가 되자 嫡庶구별의 판결기준을 정하여 상소한 기사이다.

이 기사에도 고려사회에서는 경외양처(京外兩妻)가 성행하였는데 이를 규제
할 법 규정이 없어 예제가 문란해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 고대사회는 조선시대에 들어와 비로소 태종13년 3월 11일에
유처취처(有妻娶妻)를 금하는 법, 즉 <重婚>을 엄격히 금지하였음을 알 수 있
다. 이렇게 태종13년에 유처취처 금지법이 제정되어 一夫一妻制가 법적으로 강
력하게 규정되었으며 그 이전의 고려사회는 一夫多妻制가 공공연하게 시행되
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3. 맺는 말

일본 헤이안후기에 성립된 『新猿樂記』에 등장하는 첫 번째 아내(第一の本
妻), 두 번째 아내(次の妻), 세 번째 아내(第三の妻)에 대해 구도(工藤重矩)씨
는 첫 번째 아내는 이혼당한 아내이며 두 번째 아내는 첫 번째 아내와 이혼한
후에 결혼한 아내라고 해석하고 있다. 여기서 工藤 씨가 말하는 順序는 한 아내
가 사별이나 이혼 후 결혼한 아내라는 의미의 순서를 의미하지만 위의 고찰을
통해 『新猿樂記』에 등장하는 <次の妻>는 주인공 우에몬이와 세 아내가 동시
에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으며 첫 번째, 두 번째 아내가 세 번째 아내에 대해
질투하고 있는 대목 등을 보아 一夫多妻制의 혼인형태를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일 고대 양국 사회에 나타나는 <次妻>의 용례는 의 일부일
처다첩제에서 말하는 <妾>이 아님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次妻>의 존재는

40) 『태종실록』 p.24

고려사회와 일본의 왕조시대에 나타난 일부다처제(一夫多妻制)의 유력한 증거라 말할 수 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일본 헤이안조의 <妻><妾>의 기록은 <妻>라고 기록하는 사람은 1인에 한정된다는 기계적 원칙에 근거한 것임에 불과하며 이러한 기준은 최초의 혼인관계에 들어간 여인이 <妻>, 그 이후에 혼인관계에 들어간 여인이 <妾>으로 기록되고 있으며 당시 사회에서는 ‘처첩미분리(妻妾未分離)’가 실행되었다.

한편, 고려왕조의 혼인형태는 종래 一夫一妻制와 一夫多妻制, 그리고 이 두 형태가 병행한다는 세 가지 입장으로 침예한 대립을 보여 왔는데, 위의 사례 고찰을 통해 당시 <妻><妾>의 명칭은 존재했지만 거의 신분이나 사회적 차별이 없는 거의 지위가 동등한 여러 명의 ‘妻들’이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으며 이는 고려사회가 一夫多妻制 사회였음을 말해주는 것이라 하겠다.

그리고 한일 고대사회가 一夫多妻制 사회였음을 입증하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안으로 양국의 <重婚>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았다. 먼저 『万葉集』에 나타난 兩妻例는 중국법의 영향을 강하게 받아 현실과 무관하게 법적으로만 존재했던 有形無實의 법률이었다고 볼 수 있다. 고려조에는 당이나 헤이안조처럼 重婚을 금하는 법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고 조선시대에 들어와 비로소 태종13년 3월 11일에 유처취처(有妻娶妻)를 금하는 법, 즉 <重婚>을 엄격히 금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태종13년에 유처취처 금지법이 제정되어 一夫一妻制가 법적으로 강력하게 규정되었으며 그 이전의 고려사회는 一夫多妻制가 공공연하게 시행되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고려사회와 헤이안사회는 모두 중국 당의 율령을 모방하여 율령국가체제를 구축해 갔지만 혼인형태는 중국의 엄격한 一夫一妻制 사회와는 異質的인 一夫多妻制의 혼인형태를 보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은 적어도 한국과 일본의 연구자들이 주장했던 중국 율령과의 유사성 보다는 고대 한국사회와 일본사회와의 유사성을 지적할 수 있는 대목이라 생각한다.

참고문헌

논문

- 김두현(1969) 『한국가족제도연구』서울대학교출판부, pp.414~552
 김영(2008) 「일본 왕조시대의 이상적 아내상 - 『新猿樂記』의 3명의 아내를 중심으로 -」
 『일본어문학』39집, pp.169~185
 김은파(1978) 「상속형태를 중심으로 본 고려시대 여자의 지위」 『전북사학』2, pp.85~108
 최재석(1983) 『한국가족제도사연구』, 일지사, pp.208~285
 이광규(1997) 「우리나라 혼례문화」,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pp.203~206
 工藤重矩(1994) 『平安朝の結婚制度と文學』, 風間書房
 胡潔,(2001) 『平安貴族の婚姻慣習と源氏物語』, 風間書房, pp.58~78
 重松明久校注(2006) 『新猿樂記雲州消息』, 古典文庫66, 現代思潮新社, pp.14~18
 關口裕子(2006) 『日本古代婚姻史の研究下』, 塙書房, pp.27~51
 瀧川政次郎(1982) 『日本法制史』, 有斐閣
 中川善之助(1936) 『妻妾論』, 中央公論, pp.51~52

史料

- 『고려도경』(2005) 민족문화추진위원회, 서해문집
 『고려사』(2001) 정인지의, 신서원
 『삼국유사』(2007) 역사 정옥, 진한 M&B
 『삼국지』(2004) 권30, 魏志30 高구려 (二十四史全譯), 漢語大詞典出版社
 『태종실록』(1984) 국사편찬위원회, 탐구당
 『万葉集』(1996) 新日本古典文學全集, 小學館
 『榮華物語』(1995) 新古典文學全集, 小學館
 『枕草子』(1980) 石田穰二譯注, 角川文庫
 『日本書紀』(1967) 日本古典文學大系
 『大和物語』(1994) 小學館 新編日本文學全集
 『唐律疏議』(1985) 中華書局

- ❖ 투고일 : 2009. 1. 15
- ❖ 심사일 : 2009. 2. 6
- ❖ 심사완료일 : 2009. 2. 10